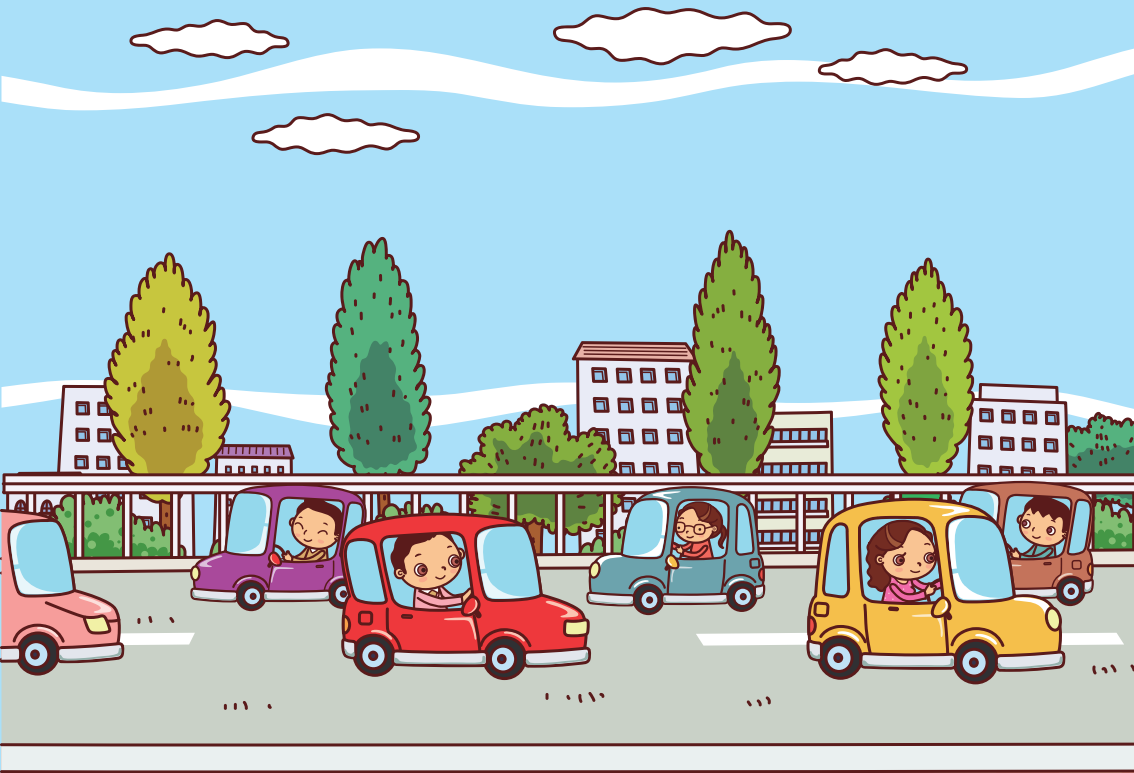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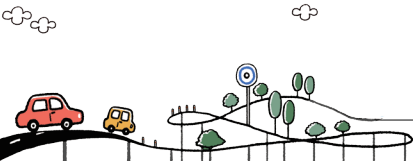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DAEGU TRAFFIC TRAINING INSTITUTE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Contents

01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소개 05

- ①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설립 목적 06
- ②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의 비전과 목표 07

02 운수종사자 교육 안내 09

- ①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10
- ②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13
- ③ 화물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14
- ④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16
- ⑤ 이동편의증진교육 법적 근거 17
- ⑥ 강화교육 법적 근거 23

03 교통연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25

04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31

- 올해,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32

05 친절한 고객응대법 35

- ① 친절서비스란? 36
- ② 기초외국어 39

06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47

- ① 교통약자란? 48
-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50
- ③ 교통약자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차별금지 52
- ④ 교통약자의 이동특성 53
- ⑤ 장애 유형별 승·하차 시 유의사항 54

목차소개



07 운전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방법 45

- ① 운전자 스트레칭 56
- ②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57

08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 61

- ①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한 매뉴얼 62
- ② 동절기 안전운전 63

09 개인형 이동장치(PM) 65

- ① 개인형 이동장치(PM)란? 66
- ② 개인형 이동장치(PM) 한 눈에 알아보기! 66
- ③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대구시 조례 67
- ④ 개인형 이동장치(PM)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 68

10 교통상식 알아둬시대!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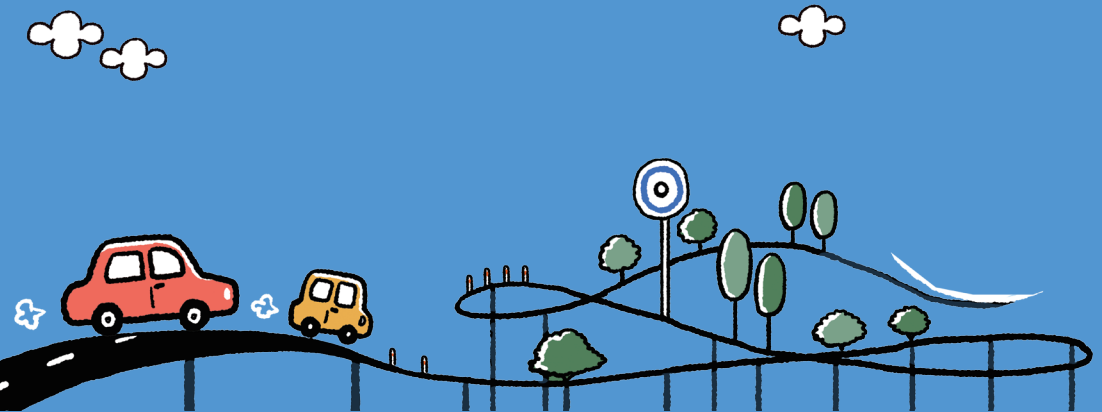
- ① 안전속도 5030 70
- ②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 70
- ③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보험료 할증 71
- ④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73
- ⑤ 과속운전 처벌 기준 74
- ⑥ 승용차 요일제 운영 75
- ⑦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75
- ⑧ 친환경 경제운전 76
- ⑨ 소화기 사용요령 77

11 대구여행안내 79

- ① 대구 12경 80
- ② 대구 10미 81
- ③ 군위 추천여행지 82
- ④ 대구시티투어버스 83
- ⑤ 대구의 문화관광해설사 85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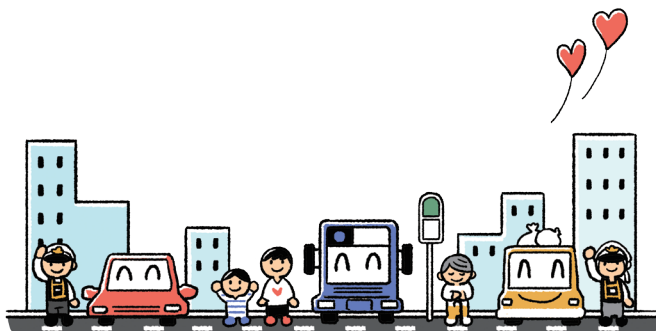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01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소개

- ①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설립 목적
- ②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의 비전과 목표





①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설립 목적



시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 운수종사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 하고, 조합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및 대구광역시 운수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 등 자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 질서, 양보 정신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으로부터는 사랑받는 가장, 이웃과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운수종사자 양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의 비전과 목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교통 안전

교통 사고 예방 홍보
현장 사례 중심 교육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육
교통 안전 문화 정착
친환경 경제 운전

친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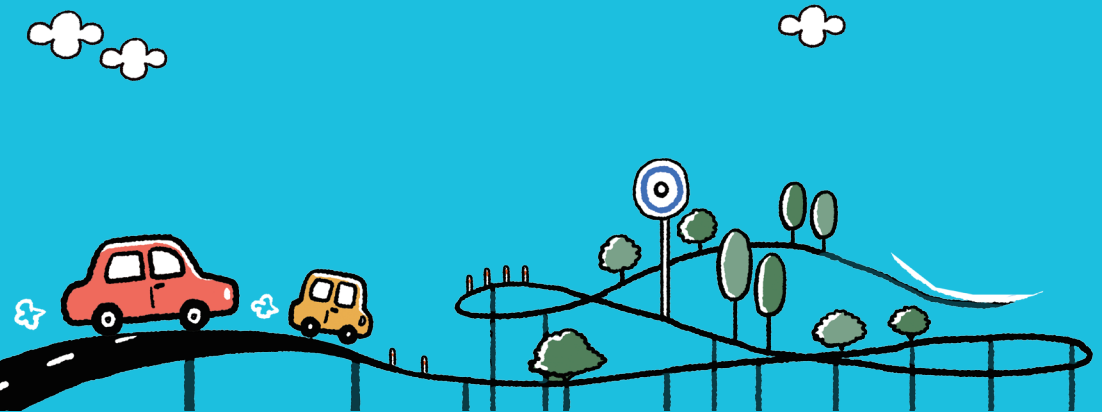
친절서비스 지식 함양
소통·배려의 인성교육
대구 교통문화 선도자 양성
교통약자 배려 응대방법
불친절 사례를 통한 교육

문화 관광

대구시정 홍보
역사·문화관광 해설
대구시 브랜드 가치 향상
대구 바로 알기
도시 이미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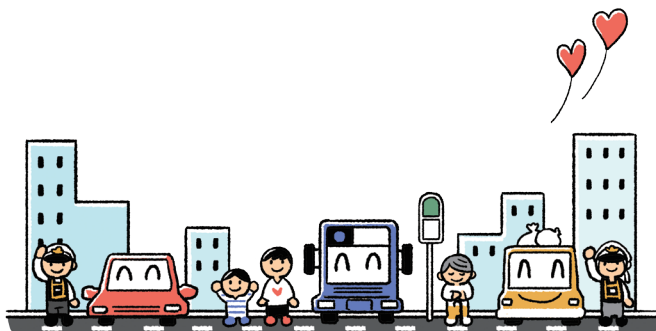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안내

- ①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②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③ 화물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 ④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⑤ 이동편의증진교육 법적 근거
- ⑥ 강화교육 법적 근거





① 여객 운수종사자교육 법적 근거

보수교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 ② 제 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1)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격년
	3)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매년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2. 비교

- ①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②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



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 ④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⑥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⑦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3.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줄임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 제2조제15호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사.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28.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5조제1항제23호	사업일부정지 1차 - 5일 2차 - 10일 3차이상 - 15일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관 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위반 횟수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20.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 제85조제1항 제23호	1차	30	30	30		30	30
			2차	60	60	60		60	60
			3차	90	90	90		90	90
			이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버스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관계 법조문	처 분 기 준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 제1항제8호	자격정지 5일



[별표 5]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관계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2차이상
1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 제1항제8호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③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 법적 근거

보수교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1항(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22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2항(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 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인 사람
 -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④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차. 법 제 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법 제11조 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사업 일부정지 (10일)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7조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일반	개인 (개별 / 용달)
3. 법 제 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1조 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 59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30	15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7조 관련)

1. 위 표. 3)나)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수)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 관련)

위 반 내 용	관계 법조문	처분내용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 제2항 제23호의3	1차 위반 시 - 20만원 2차 위반 시 - 3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⑤ 이동편의증진교육 법적 근거

이동편의증진교육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

-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

-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 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 다. 체험교육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시 조례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저상버스)

- ①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교육)

-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 나. 교육의 내용
 - 1)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2) 장애인 인식 개선
-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과 제도
-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삭제
5. 삭제

③ 제1항의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시행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교통사업자에게 제1항제1호의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제1항제3호의 교육을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강화교육 법적 근거

강화교육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8조 2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교육대상

● 여객

1. 법 제26조 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법 21조제6항 :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 1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특별검사 대상자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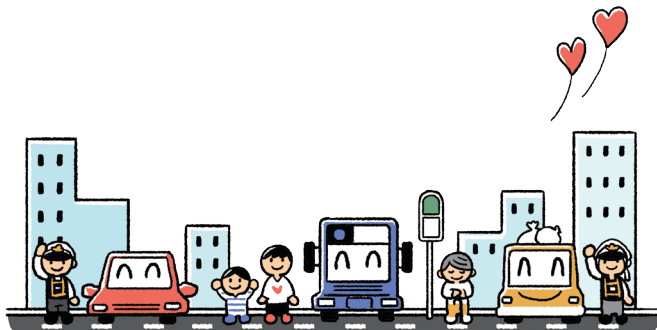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03

교통연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1. 교육 사전예약제 시행 및 교육대상자 여부 확인 안내

☞ 교육사전예약 안내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은 사전예약제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예약 후 수강가능)

☞ 대상자 여부 및 교육일정

매년 2월 중순 이후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수교육대상자확인』 및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은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받으셔야 합니다.

→ 대리교육 시 교통연수원 연수생 수칙 제9조(근태관리)에 의해 퇴교 조치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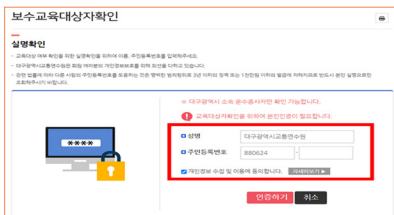
①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검색



②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클릭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하기' 클릭



④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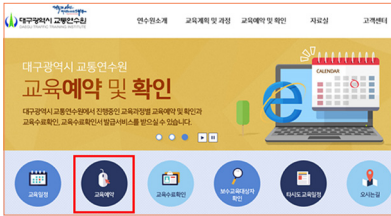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소속 운수종사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03 교통연수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교육예약 방법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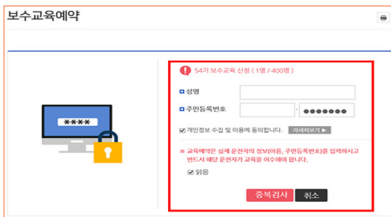
① '교육예약'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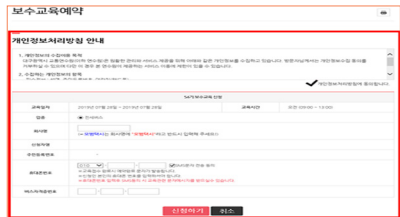
② 원하는 날짜에서 '신청' 클릭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중복검사' 클릭



④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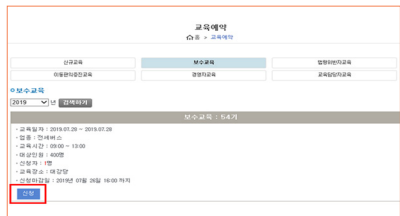


교육예약 방법 (스마트폰)

① '교육예약'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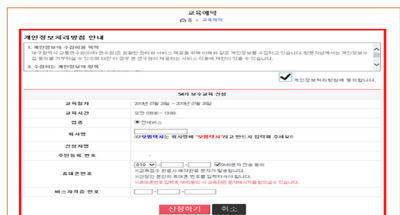
② 원하는 날짜에서 '신청' 클릭



③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확인' 클릭



④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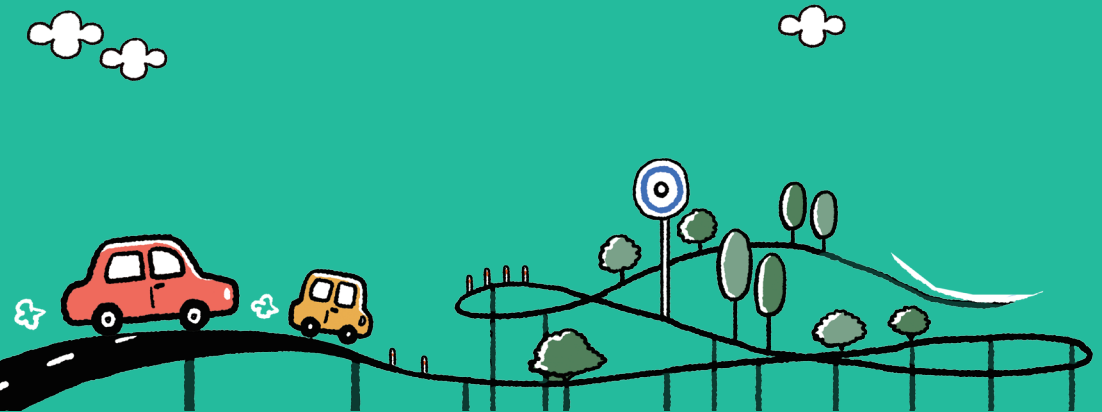
3. 헛갈리기 쉬운 기관별 업무내용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053-765-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업종 신규교육 및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전자격증 시험 및 발급 • 버스운전자격증 시험 및 발급, 자격증명발급 • 화물운송자격증 시험 및 발급 • 운전적성 정밀, 신규, 특별검사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체협교육장	054-530-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양수교육 • 각종 체험교육, 의무교육과정, 유사면제교육과정 등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증 발급
	053-659-6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 별점감경교육)

※ 사업용자동차 자격증(택시·화물)은 시험 및 발급처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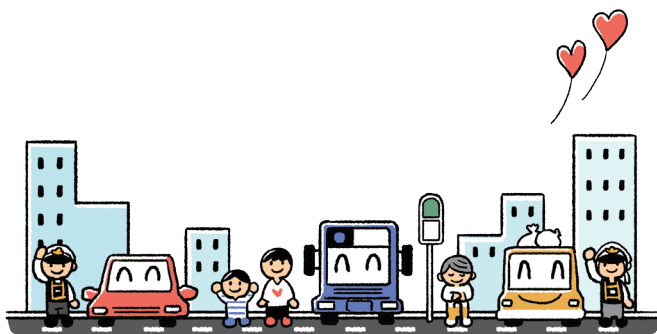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04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4. 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2 상습 음주운전 차단 (2026.10. 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시행(2024. 10. 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 10. 24.)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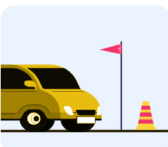


3 면허 갱신 기간 변경 (2026. 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 편의 증진



4 찾아가는 도로 연수 (2025. 12. 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5 실제 운전 경력 검증 (2026. 3. 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7년 무사고시 '운전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 자'에게 1종 면허 부여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 변화

구 분		'윤창호법'(19. 6. 25 시행)		'윤창호법'위헌 보완(23. 4. 4시행)		
단순 음주 (1회)	0.03~ 0.05%	0.03~ 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 0.1%	0.08~ 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1~ 0.2%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0.2% 이상	단순음주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단순 음주 (10년 이내 2회 이상)	0.03~ 0.2%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단순운전(2회)	0.2% 이상				징역 2년~6년 벌금 1천만원~3천만원	
측정거부 측정방해* (25. 6. 4 시행)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1회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10년 내 2년 이상		징역 1년~6년 벌금 500만원~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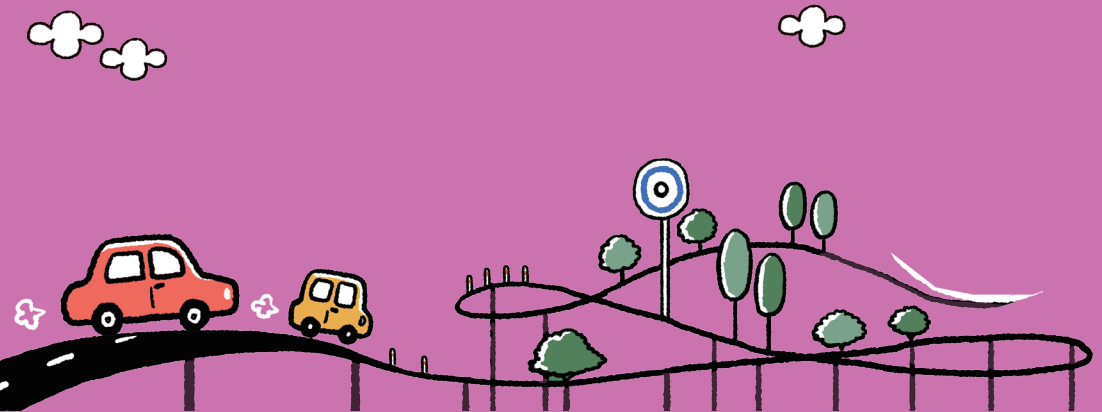
* 소위 윤창호법(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결정(전합))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결격(정지) 기간

구 분	행정처분	결격(기간)	해당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벌점 100점)	1년 이하	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 거부 방해 뺑소니 /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제82조 제2항 제3호
상습(2회) 음주 거부 방해 교통사고	면허취소	3년	제82조 제2항 제5호
음주 거부 방해 상습(2회) / 교통사고	면허취소	2년	제82조 제2항 제6호
단순 음주(0.08% 이상) · 거부 방해	면허취소	1년	제82조 제2항 제7호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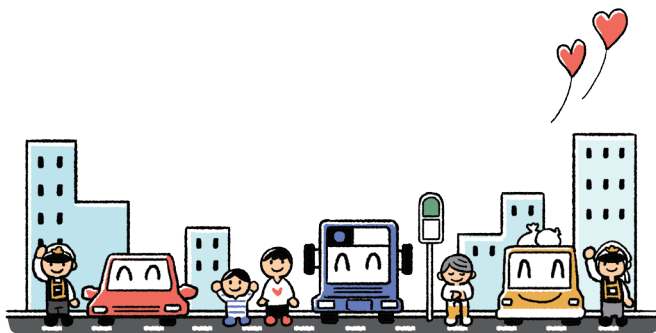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05

친절한 고객응대법

- ① 친절서비스란?
- ② 기초외국어





① 친절서비스란?

친절서비스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바탕으로 정성된 마음을 담아 승객을 응대함으로써 승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은 남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호감과 기쁨을 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정성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라고도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기본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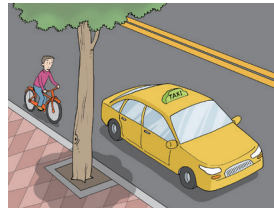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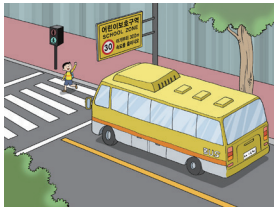


1. 출발 전 운전자 및 차량 상태 점검

- 1) 운전자의 복장 및 용모 상태 확인
- 2) 택시·버스운전자자격증명 및 불편신고 안내문 부착 상태 확인
- 3) 차량 실내 외 청결·온도 상태 확인
- 4) 타이어 및 엔진 이상 여부 확인

2. 승객 승차 시 응대

- 1)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등 반갑게 인사
- 2) 승객 착석 후 안전벨트 착용 안내
- 3) 승객이 “반월당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목적지를 말하였을 때 “반월당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며 목적지를 한번 더 확인
- 4) 승객이 자리에 완전히 착석하거나 손잡이를 잡은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출발



3. 차량 운행 시

- 1) 급출발, 급정거 및 지나친 경적사용 없이 안전하게 운행
- 2) 운행 중 교통법규(속도, 신호, 정지선 위반 등)를 준수
- 3) 목적지까지 우회 없이 최적경로로 운행
- 4) 정치이슈 및 성적으로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대화 주의

4. 승객 하차 시

- 1)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목적지 도착 음성안내
- 2) 현금결제 유도 및 카드결제 거부 금지
- 3) 승객이 물품을 놓고 가지 않도록 음성안내
- 4) 승객이 하차할 때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안전사고 주의 안내

5. 차량 운행 종료 시

- 1) 지갑, 스마트폰 등 분실물 확인 및 보관
- 2) 차량 내부 청소
- 3) 차량 엔진 등 상태 점검



☑ 택시 서비스 check!

- 차량내 담배냄새 및 청결상태 확인해요~
- 승객 승·하차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요~
- 가까운 거리라도 승차거부는 안돼요~
- 전기택시 통행료 요구는 안돼요~
- 사업구역 위반하시면 안돼요~
- 운행 중 스마트폰 및 DMB 사용 안돼요~
- 승객에게 반말을 주의해요~
- 야간시간 아파트인근 장시간 잡담 및 흡연에 주의해요~
- 야간시간 요금계산시 뒷좌석 실내등 켜요~
- 승객 하차시 오토바이 및 자전거 접촉사고 주의해요~

☑ 버스 서비스 check!

- 차량내 담배냄새 및 청결상태 확인해요~
- 승객 승차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요~
- 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객 탑승하면 안돼요~
- 승객 자리 착석 확인 후 출발해요~
- 운행 중 스마트폰 및 DMB 사용 안돼요~
- 운행 중 이동하는 승객에게 안전사고 주의 안내해주세요~
- 정차 후 하차 벨 확인해요~
- 정차지역에서 무정차통과를 주의해요~
- 승객 하차시 오토바이 및 자전거 접촉사고 주의해요~



② 기초외국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차량 탑승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어서 오십시오.	Welcome 웰컴	いらっしやいませ。 이랏샤야마세	欢迎欢迎。 환잉 환잉
어디로 모실까요?	Where can I take you? 웨어 캔 아이 테이크 유?	どちらまでですか 도치라마데 데스카	你去哪儿? 니 취 나알?

목적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구공항까지 부탁드립니다.	Daegu airport, please. 대구 에어포트 플리즈.	テグ空港まで お願いします。 대구 쿠-코-마데 오네가이시마스.	去大邱机场。 취 다치오 지차양.
12시까지 도착 가능할까요?	Is it possible to get there by 12? 이즈잇 파스블 투 겟테어 바이 투웰브	12時まで 到着できますか 쥬니지마데 토-차쿠 데끼마스카	12点能到吗? 스알디엔 닝따오 마?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It takes about 30 minutes 잇 테이크스 어바웃 씨티 미니츠	約30分ぐらい かかります。 야쿠 산쥬-분구라이 카카리마스.	需要30分左右。 쉬야오 썬스펀 주오요우



목적지 도착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도착했습니다.	have arrived. 해브 어라이브드	到着しました 토-차쿠 시마시타	到了. 따오-리
요금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fare? 하우머치 이즈 더 페어	いくらですか 이쿠라 데스카	多少钱? 뚜어샤오 치엔
10,000원입니다.	10,000won, please 텐사우즌 윈 플리즈	10,000ウおんです。 이치만원 데스	1万元. 이완위엔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Here is your change 히어 이즈 유어 체인지	こちら、おつりです。 고치라 오츠리데스	这是找给你的钱。 찌스자오게이니 더치엔
안녕히 가십시오.	Good bye 굿바이	さようなら 사요나라	请慢走 / 再见 칭 만조우 / 짜이찌엔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day, 해브 어 나이스 데이	いい一日を 이이 이치니치오	祝你愉快(快乐)! 쭈니 위콰이 / 콰이 리

기초 대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땡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리가토-고자이마스	谢谢。 씨에씨에
죄송합니다	I am sorry 아엠쏘리	どうもすみません 도-모 스미마셴	对不起。 퇴이 부 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실례합니다	Excuse me 익스큐즈 미	失礼します。 시츠레이시마스.	失礼了。 (请问一下) 스리 리 / 칭원 이사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유어 웰컴	かまいません 카마이마센	不客气。 부커치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댓즈 올 라잇	だいじょうぶです 다이쥬-부데스	没关系。 메이관시
예, 알겠습니다.	Yes, I see. 예스 아이 씨	はい、わかりました。 하이, 와카리마시다	好的。 하오 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Please speak more slowly. 플리즈 스피크 모어 슬로우리	ゆっくり話して ください。 윗쿠리 하나시테 구다사이	请慢点儿说。 칭 만디얼 수어
중국어/일본어 /영어를 조금 밖에 못합니다.	I can speak a little bit of English. 아이캔 스피크 어 리틀 빗 오브 잉글리시	日本語は少ししか できません。 니혼고와 수코시시카 데키마센	汉语只会一点儿。 한위 즈회이 이디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I am sorry I don't understand 아엠쏘리 아이 돈 언더스탠	なにをおっしゃって いるのかわかりません 나니오 윗삿테이루카 와카리마센	你说的话我不懂。 니 수어더화 위뿌퐁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 beg your pardon? 아이 백 유어 파든	もう一度おっしゃっ てください。 모- 이치도 윗삿테 쿠다사이.	请再说一遍， 好吗？ 칭 짜이수어 이비엔 (하오마)?



외국인 승객이 할 수 있는 질문

한국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영어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subway station? 웨어 이즈 더 니어러스트 버스 스탱/서브웨이 스테이션?
일본어	最寄りのバス停/地下鉄駅はどこにありますか? 모요리노 바스테에 치카테즈에키와 도쿄니 아리마스카
중국어	最近的公交站和地铁站在哪里? 쥬이진 더 궁자오잔 허 디티에잔 짜이 날리?
한국어	저는 ABC 동물원에 가는 중입니다. 이 버스가 ABC 동물원에 가는 버스입니까?
영어	I'm on my way to the ABC Zoo. Does this bus go to the ABC zoo? 아이엠 온 마이 웨이 투 더 에이비씨 주. 더스 디스 버스 고 투 더 에이비씨 주?
일본어	私はABC動物園に行っています。 このバスはABC動物園に行くバスですか? 와타시와 에에비시이도오부츠엔니 이쿠 토추우데스 코노 바스가 에에비시이도오부츠엔니 이쿠 바스테스카
중국어	我正在去ABC动物园。请问这辆公交车是去ABC动物园的吗? 워 정짜이 취 ABC 풍우위엔, 칭원 쩌 량 궁자오처 쓰 취 ABC 풍우위엔 더 마?



한국어	저기에 빠르게 가려면 어떤 대중교통이 나올까요?
영어	Which public transportation is better to get there quickly? 위치 퍼블릭 트랜스퍼테이션 이즈 베티어 투 겟 데어 퀵클리?
일본어	そこにすばやく行くにはどのような公共交通機関が良いですか? 소코니 하야쿠 이쿠니와 돈나 코오쿄오쿄오츠우키칸가 이이데쇼오카
중국어	请问去那里，坐什么公共交通最快? 칭원 취 나리, 쭈어 셴머 궁공자오통 쭈이 콰이?





참고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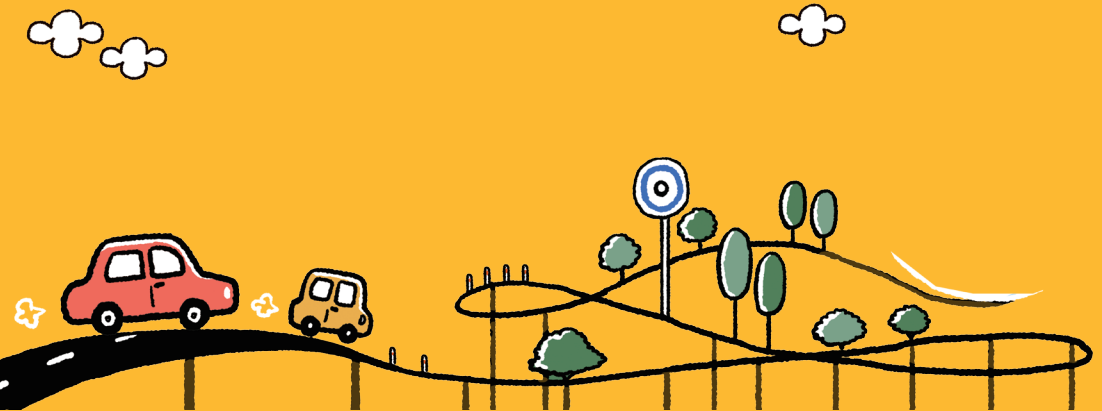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공항	Airport 에어포트	くうこう 쿠우코우	机场 지창
역	Station 스테이션	えき 에끼	火车站 후오차판
버스 정류장	Bus stop 버스스톱	バスていりゅうじょ 바스테이류쵸-	公共汽车站 퐁공치차판
택시 승강장	Taxi stand 택시 스탠드	タクシのりば 타쿠시노리바	出租汽车站 추추치차판
시청	City hall 시티 홀	しちょう 시초우	市庁 쓰팅
경찰서	Police station 폴리스스테이션	けいさつしよ 케이사츠쇼	警察局 징차궈
안내소	Information center 인포메이션 센터	あんないじよ 안나이쵸	问讯处 원쑤추
우체국	Post office 포스트 오피스	ゆうびんきょく 유-빈쿄쿠	邮局 요우궈
은행	Bank 뱅크	ぎんこう 긴코우	银行 인항
공중전화	Public phone 퍼블릭 폰	こうしゅうでんわ 코슈텐와	公用电话 퐁용띠엔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백화점	Department store 디파트먼트 스토어	デパート 데파-토	百货商店 바이후오쌍띠엔
시장	Market 마켓	いちば 이치바	市场 쓰창
1, 2, 3, 4, 5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이치, 니, 산, 시, 고	이, 얼, 썬, 쓰,우
6, 7, 8, 9, 10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로쿠, 시치, 하치, 큐, 쥬	리유, 치, 빠, 지우, 쓰
100, 1000	헌드레드, 사우전드	하큐, 센	바이, 치엔
10,000	텐사우즌	만	완
지역음식	local food 로컬 푸드	地元の食べ物 지모토노 타베모노	地方美食 지방 메이스
지역행사	local event 로컬 이벤트	地域行事 치이키교오지	地区活动 디시위훙둥
사진찍어 주세요	Please take a picture for me. 플리즈 테익 어 픽처 포어 미.	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 샤신오 툃테쿠다사이	请帮我拍照 칭 방 위 파이자오
호텔	Hotel 호텔	ホテル 호테루	酒店 취오디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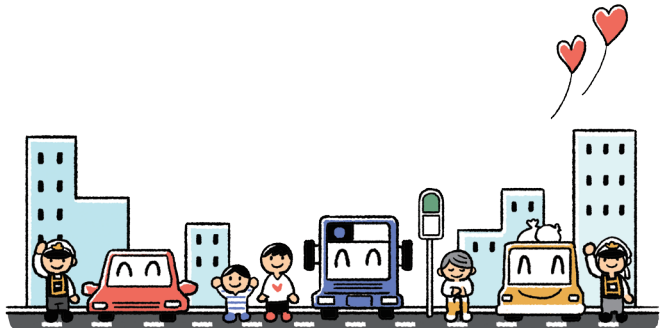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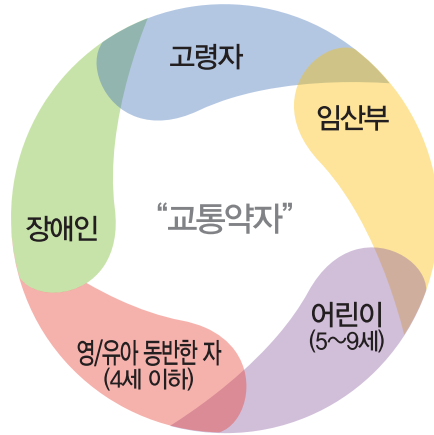
- ① 교통약자란?
-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 ③ 교통약자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차별금지
- ④ 교통약자의 이동특성
- ⑤ 장애 유형별 승·하차 시 유의사항





① 교통약자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노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라 부릅니다.

“교통약자”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



함께 살아가는 작은배려 장애인 에티켓



눈을 보며 말해요
편안히 눈을 바라보며
대화해 주세요



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뇌 병변장애는 몸이 불편하거나
발음이 어눌할 뿐
지능이 낮지 않아요



끝까지 경청해요
끄덕이며 공감하고
듣기 좋은 속도와 크기로
대화해 주세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휠체어를 밀어주기보다
문을 잡아 주며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도와드릴까요?
돕기 전, 먼저 물어보세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중
일 수 있습니다.
말없이 돕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세요



**장애인 전용 시설
비장애인 이용 금지**
주차구역과 화장실 등
장애인 전용 시설은
급할 때 사용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유도블록 위에
물건을 놓지 마세요**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구체적인 거리로
길을 설명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이쪽, 저쪽 등
추상적인 표현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거리로 설명해 주세요
(ex. 3m 직진하여 우회전하세요)



**보이지 않는 장애도
배려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한 행동 요구를 피하고
음식도 주의해서 권해주세요

* 출처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www.sgwon.or.kr)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 정기, 고정 노선의 셔틀버스

- 운영 : 시내버스 업체 (저상버스)
- 이용대상 : 교통약자 및 누구나
- 운행대수 : 852대

2. 장애인콜택시

- 운영 :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 이용대상 : 교통약자 및 누구나
- 운행대수 : 316대



3. 대구시 특별교통수단

- 운영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나드리콜)
- 이용대상 : 보행상의 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상이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운행대수 : 218대
- 이용시간(24시간)
 - * 주간 : 07시 ~ 22시 * 야간 : 22시 ~ 07시
- 접수방법
 - 즉시접수 : 이용을 원하는 시점에 바로 신청
 - 사전접수 : 이용을 원하는 시점부터 1시간 전 신청
 - 왕복접수 : 동일 구간 신청 가능, 목적지 도착 후 30분 내 재탑승(30분 초과 시 차량 취소 및 당일 이용 제한)
- * 콜센터 : 1577-6776
- 운행지역
 - * 대구시내 전역
- 대구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경산시 일부,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 다산면)
- 단, 출발지는 대구광역시인 경우만 가능



12월 16일부터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해지는

나드리콜



나드리콜이 달라집니다

01

"휠체어 장애인 우선 배차"
시스템 도입



특장차 이외 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은
특장차가 우선적으로 배차됩니다.

02

"실제 도로상의 이동거리"
배차로 대기시간 단축



차량과 고객과의 실제 도로상의
이동거리를 탐색 및 근거리배차로
효율적인 배차가 실현됩니다.

03

이용고객 중심의
편의시스템 향상



배차접수 후 차량의 이동위치와
도착시간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줍니다.

나드리콜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나드리콜 1577-6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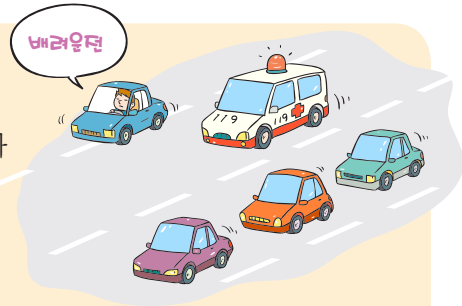
③ 교통약자의 이동 및 교통수단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 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 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제도를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 ◆ (운전 중) 저상버스에 이동약자가 승·하차할 경우 잠시 기다려주세요!
- ◆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아 주세요!
- ◆ 특별교통수단(나드리콜)은 운행규칙상 시속50km이상 주행 하지 못하기에 뒤에서 경적을 울리지 마세요!
- ◆ 복잡한 도로나 주차장에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이용객이 승·하차시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너그럽고 여유로운 운전 부탁드립니다.



④ 교통약자의 이동특성

구분	보조장구	통행 시 특성
지체 장애인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이동이 곤란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데 많은 공간이 필요 - 야간의 요철과 단차에도 통행 곤란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을 때의 동작이 힘들 - 이동거리의 제한
	목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이동이 힘들 - 넘어지기 쉬움 - 보행능력이 약함 - 보행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동하기가 곤란하고 위험
시각 장애인	지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팡이로 진행방향의 앞을 두드리며 걸음 - 형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담이나 벽이 있는 곳에서는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 걸음
지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반응, 보행속도가 늦고 사고위험이 있음 - 피로하기 쉬움 - 복잡한 정보처리가 곤란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한 상황에서의 이동곤란 - 무거운 화물을 들지 못함 - 눈의 위치가 낮음 - 장시간 보행이 어려움



⑤ 장애 유형별 승·하차 시 유의사항

1. 지체장애인

- 보행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 목발 혹은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되도록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의자에 앉는 것을 확인 후 출발하세요.
- 모든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택시 트렁크에 수동휠체어가 들어갈 경우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문을 고정할 수 있는 끈 등의 보조 고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 수동휠체어를 접는 방법은 시트 앞, 뒤 중간을 잡고 끌어 올려주세요.

2. 시각장애인

- 좌석 등받이 등, 차량 내부구조를 만져 보도록 안내 - 시내버스
- 서서 가야 할 경우 : 손잡이를 잡도록 안내 - 시내버스
- 장애인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입니다.

3. 청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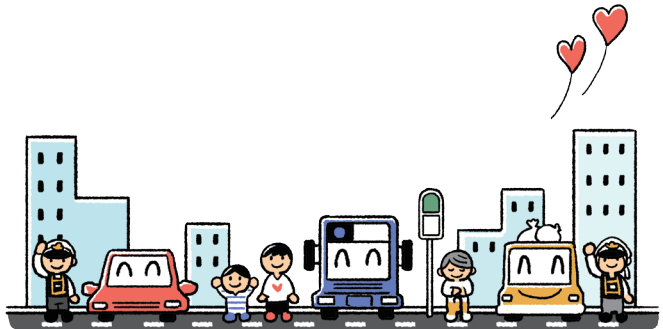
- 통역의 도움 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는 필담과 바디 랭귀지, 입모양을 통한 구화 등을 사용합니다.
-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화를 모른다고 해서 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야기 합니다.

4. 지적장애인

-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서 의사를 정확히 파악 하도록 합니다.
-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하는 등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신 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방법

- ① 운전자 스트레칭
- ②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① 운전자 스트레칭

장거리 운전하느라 뭉친 몸 이렇게 풀어보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을 하다보면 목, 허리, 어깨 등의 통증과 함께 몸의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 쌓이는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상체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01.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올려주세요
02. 최대한 위로 뻗어 올려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양 옆으로 최대한 기울여주세요.



목에 좋은 스트레칭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하다보면 거북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목을 푸는 스트레칭을 통하여 예방해봅시다!

01. 앉은 자세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양 손바닥을 뒤통수에 대고 깍지를 낍니다.
02. 고개를 한 쪽으로 가볍게 기울이고, 반대편으로도 실시합니다.
03. 각 3회씩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긴장된 목 양쪽 근육의 피로감이 풀어지며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에 자칫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통하여 허리의 부담을 줄여 봅시다.

01. 차에서 내린 뒤 양손을 깍지를 끼고 하늘을 보며 쪽 기지개를 펴니다.
02.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긴장한 척추 주변 근육이 풀어지면, 요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②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1. 심폐소생술(CPR)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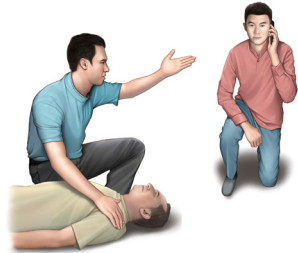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 가능합니다.

2. 심폐소생술 진행 순서

1) 환자의 의식을 파악한다.



2)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요청



3) 가슴압박(압박 깊이 : 약 5cm, 속도 : 분당 100~120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성 심장정지, 심장정지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 가슴압박 :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유지한다.



참고사항 : 가슴압박의 위치와 자세



- 가슴압박의 위치 :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
-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힌 뒤 구조자는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시행할 때 극대화 됨.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1) 전원켜기



※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다.

2) 두 개의 패드 부착



※ 패드 붙이는 위치

패드1)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
패드2)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부착

※ 패드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하며, 패드 부착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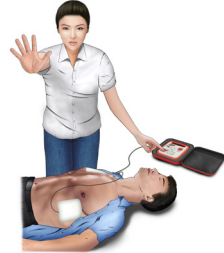


3) 심장리듬 분석



※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는다.

4)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접멸하고 있는 쇼크 버튼을 눌러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다.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자동심장충격을 시행한 뒤에는 즉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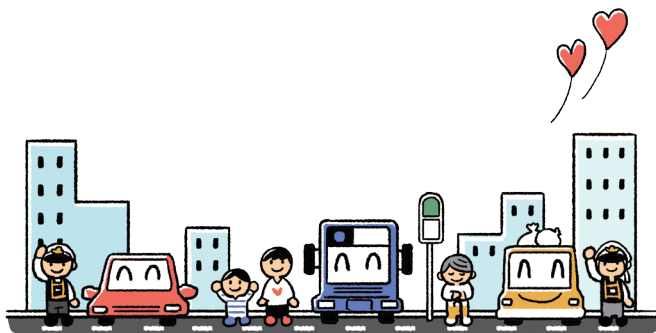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전운전을 위한 가이드

- ①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한 매뉴얼
- ② 동절기 안전운전





① 안전한 화물차 운전을 위한 매뉴얼

1. 사고예방을 위해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2. 차량 운행 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1 사고 예방, 충분한 운전자 휴식!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기준 강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1. 3. 1. 시행)

2시간 연속운전

15분 휴식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태만 사고 증가

※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의 약 80% 차지



위반시 행정처분

• 과징금 180만원, 과태료 50만원

2 운행안전, 차량 운행 기준 준수!

적재물 이탈 방지



폐쇄형 적재함 또는 고정장치 등 설치

과적 운행 금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제한

불법 개조 금지



보조지대 설치 시 튜닝 승인 조건 만족



위반시 행정처분

- ①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미조치 운행
 - 과징금 120만원, 과태료 100만원
- ② 과적 운행 : 과태료 50~300만원
- ③ 불법튜닝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첨단안전장치 활용을 통해 안전운행 하세요!

3 안전 우선, 첨단안전장치 활용!

운행기록장치 ▼



- 장착대상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정상작동 확인 방법
 - 전원 상태 확인
 - 운행기록자료 제출 확인

※ 미장착 및 미작동 시 50~150만원 과태료 부과

최고속도제한장치 ▼



- 장착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
- 정상작동 확인 방법
 - 최고속도 90km/h 초과운행 여부

※ 무단 해제 및 조작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차로이탈경고장치 ▼



- 장착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신규제작차)
 - ※ 차량별 시행일자 상이
- 정상작동 확인 방법
 - 계기판 경고등 점등 유무
 - 운행시 경고등 작동 유무

※ 미장착 및 미작동 시 50~150만원 과태료 부과

비상자동제동장치 ▼



- 장착대상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신규제작차)
 - ※ 차량별 시행일자 상이
- 정상작동 확인 방법
 - 계기판 경고등 점등 유무
 - 운행시 정상 작동 유무

※ 미장착 및 미작동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② 동절기 안전운전

1. 도로살얼음(일명 '블랙아이스')이란?

- 빙판 또는 살얼음판
-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 맨눈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이거나 도로 색이 보여 **식별 곤란!**
- 갑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져 **차량 제동 곤란, 제동거리 증가**로 연쇄 추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 매우 높음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



44대 추돌 - 사상자 39명
(사망 7명, 부상 32명/2019. 12. 14)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고



44대 추돌 - 사상자 37명
(사망 1명, 중경상 36명/2023. 1. 15)

2. 도로살얼음 상습 발생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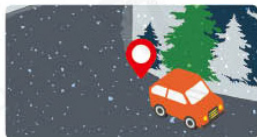
- 교량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



교량 위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3.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

- ①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
- ②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감속!
※ 빙판길에서 시속 40km를 초과 시 제어 불능 상태
- ③ 급제동, 급핸들조작, 급가속은 절대 금물!
※ 급격한 차량 조작은 차량회전(스핀현상)으로 직결
- ④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운전 필요!
- ⑤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기!
- ⑥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 조작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로 핸들 조작 시 차량회전(스핀현상) 심화
- ⑦ 히터 사용을 줄이고 차량 안을 환기시켜서 졸음운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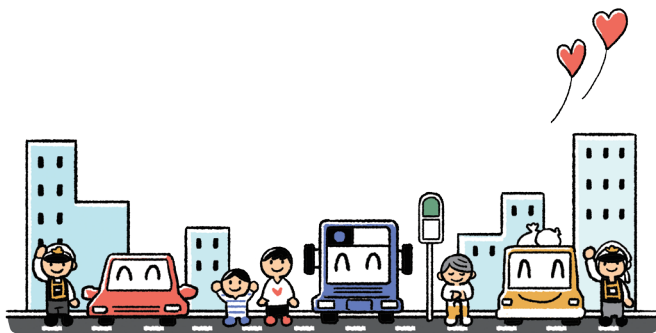
4.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 ①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② 개인형 이동장치(PM) 한 눈에 알아보기!
- ③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대구시 조례
- ④ 개인형 이동장치(PM)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





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저속의 개인이동수단으로서, 최고속도 25km 미만, 자체중량이 30kg 미만인 1인용 교통수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 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 2명

② 개인용 이동장치(PM) 한 눈에 알아보기!

	시행(2021.5.13.)
명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	만 16세 이상
제한속도	15km/h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운전가능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
기타 안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필수(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 승차 정원 준수(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 13세 미만은 운전금지(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 야간운전 시 등화장치 작동 - 약물, 과로,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금지
통행도로 가능	<p>차도 우측 가장자리 운행(인도 운행 불가)</p> <p>운행차로 위반 시 범칙금 4만원</p>



③ 개인용 이동장치(PM) 관련 대구시 조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개인용 이동장치(PM)·공유자전거 올바른 사용법

**공유 전동킥보드(PM)
5대 올바른 이용수칙**





안전모 착용하기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무면허 운전 안하기
제2종 원동기자전거 면허이상 필요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올바른 주차하기
·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승차 정원 지키기
· 2인 이상 동반 탑승 금지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PM)·자전거 주·정차 가이드라인


주·정차 금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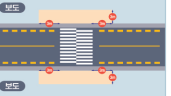
☑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엘리베이터의 진출입구 포함




☑ 버스승강장 5m 이내




☑ 횡단보도 3m 이내




☑ 점자블록 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자전거 도로



☑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구역

주·정차 권장 구역



☑ PM 주차구역



☑ 자전거 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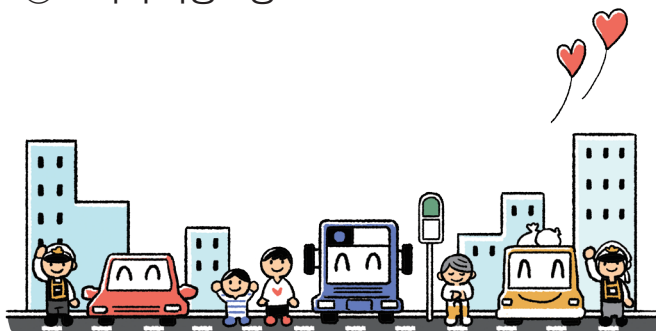
☑ 가로수 사이, 가로등, 전봇대 등 주요구조물 옆



☑ 보·차도 사이 펜스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길가장자리

교통상식 알아드립니다!

- ① 안전속도 5030
- ②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
- ③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보험료 할증
- ④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 ⑤ 과속운전 처벌 기준
- ⑥ 승용차 요일제 운영
- ⑦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⑧ 친환경 경제운전
- ⑨ 소화기 사용요령





①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저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됨을 안내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 60km/h - 편도2차로 이상 도로 : 80km/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부 내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 50km/h - 주택가 이면도로와 같은 생활도로 : 30km/h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 : 60km/h

기대 효과

-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 서울시 시범사업 :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15.8%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부산시 시범사업 : 전체 사망사고 24.2% 및 보행자 사망사고 37.5% 감소

② 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를 통한 청장년층 유입 촉진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를 운전한 경력 및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택시면허 양수 • 무사고 운전경력5년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이수로 개인택시면허양수<신설>

기 대 효 과

-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를 통한 청장년층 진입기회 확대
- 젊은 택시운수종사자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 개편

③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벌점 부과 외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로 알아보기

1 **전방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법칙금 **벌점**
 7만원 6만원 **10점**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로 알아보기

2 **전방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 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법칙금 **벌점**
 7만원 6만원 **10점**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로 알아보기

3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법칙금 **벌점**
 7만원 6만원 **10점**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중과실 12개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로 알아보기

4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우회전 하는 경우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법칙금 **벌점**
 5만원 4만원 **10점**

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 현장 적발 시 보험료 할증 관련 주요내용

- ▶ (5%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 ▶ (10%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④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라. 20km/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제32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위반내용	벌칙규정	벌점	비고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15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30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⑥ 승용차 요일제(대중교통 마일리지) 운영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일적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21.12.31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마일리지 운영 -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 적립



이용방법

'다대구' 앱 설치 → 승용차요일제 (차량번호·운휴일·교통카드 등록) → 대중교통 이용 후 마일리지 적립 → 대구로페이 또는 원패스로 사용


기대효과


- 1) 승용차 이용감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도심 교통소통 원활
- 2)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재이용 수단 제공

⑦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도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6대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



- 

소화전 반경 5m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적색노면 표시 소화전은 과태료 2배
- 

교차로모퉁이 5m
교차로 모퉁이는 24시간 신고 가능 단, 생활도로(황색심선)는 21시~07시 제외
- 

버스정류소 10m
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가 된 곳
- 

횡단보도 + 정지선
횡단보도(정지선)를 침범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 ~ 20시
- 

인도 위
사유지에 접한 경우 차량이 인도(공도) 50% 이상 침범 금지



친환경 경제운전



대한민국 국민
한국판뉴딜

새만금개발청

에코드라이브란?

Economy + Ecology + Driving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글로벌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에 맞서
고안된 신개념 운전방식
경제, 환경,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경제운전



대한민국 국민
한국판뉴딜

새만금개발청

에코드라이브 효과



대한민국 국민
한국판뉴딜

새만금개발청



에코드라이브 실천 방안

- 교통정보 생활화
- 엔진 예열 최소화
- 출발은 부드럽게
- 관성주행 활용
- 정속주행 유지
- 경제속도 준수
- 공회전 최소화
- 적재물 다이어트
- 타이어 공기압 체크
- 에어컨 사용 자제
- 소모품 관리 철저

대한민국 국민
한국판뉴딜

새만금개발청

작은 실천이 모여 모두의 실천이 된다면
지구온난화와 자원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부터 실천해보아요, 에코드라이브!





소화기 사용요령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을 올바르게 알면 화재 초기 대응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해 잡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1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신속하게 옮깁니다.



2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선 후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합니다.



4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니다.



5 분말을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소화기 관리요령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하여 서늘한 곳에 설치합니다.

-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합니다.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충전합니다.
- 축압식 소화기는 계기가 불이 있는데 바늘이 녹색 정상 위치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바늘이 노랑, 빨간선을 표시하면 119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소화기 비치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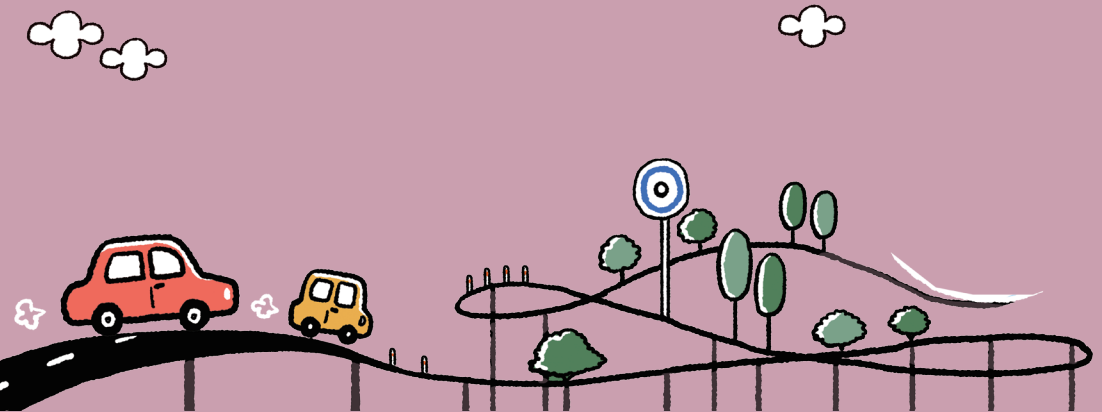
- 1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합니다.
- 2 시장은 구획된 점포마다, 아파트에서는 세대별로, 차량에는 1kg급 이상을 하나씩 비치합니다.
- 3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합니다.
- 4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 문 가까운 곳에 비치합니다.
- 5 물이 닿는 곳,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에 놓아서는 안됩니다.



National Fire Data System
국가화재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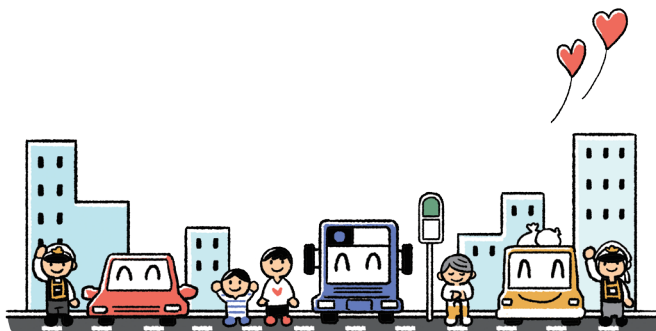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행복운전입니다



대구여행안내

- ① 대구 12경
- ② 대구 10미
- ③ 군위 추천여행지
- ④ 대구시티투어버스
- ⑤ 대구의 문화관광해설사





① 대구 12경

(출처 : 대구트립로드)



비슬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강령고령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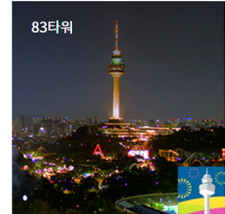
신천



팔공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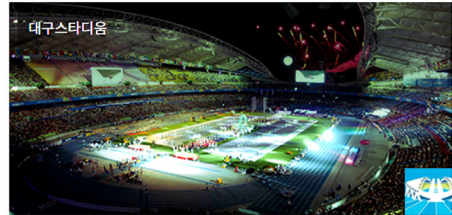
수성못



83타워



서문시장



대구스타디움



동성로



달성도성



경성감영과 옛골목



② 대구 10미

(출처 : 대구트립로드)

맛의 고장 **대구** 대구 10味

10가지 별미

대구에 와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본고장 향토음식

대구 시내 각지의 관광지과 음식 점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느끼고,
입과 배를 즐겁게 해주는 대구만의 맛집 여행을 추천합니다!



대구따로국밥(대구육개장)
얼큰하고 진한 국물지존



막창구이
주랑들이 빈한 그 맛!



몽티기
생고기의 씹는 맛



동인동짬갈비
입안이 얼얼한 갈비!



논메기매운탕
든든하고 얼큰함!



복어볼고기
매콤한 고급 퓨전



누른국수
시원한 얼치 육수



무침회
매콤달콤 술안주



야기우동
해산물과 야채 천국



남작만두
얼지만 강한 맛



③ 군위 추천여행지

(출처 : 군위군 문화관광과)



사랑은이야기마을



김슈환 수경정 사랑과 나눔 공원



300년 역사(별주씨)



국립원예특과학원 사과연구소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



황남마을



동산계곡



화본역



엄마야배어렸을적에



보국국사 일연스님(원각사)



아미산



석산리 신춘생테마마을



④ 대구시티투어버스

시티투어는 도시 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 관광지, 시정현장 등을 순회하며 도시의 문화와 역사 및 관광지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시내 순회관광 프로그램을 말하며, 대구 시내 일대를 순환하며 여행객 개개인이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심권 순환코스이다.

1. 순환 코스

- 대구시티투어는 매주 화 ~ 일요일 주 6일 운행합니다.(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 탑승권은 투어 당일 버스 내에서 기사님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 당일 선착순 탑승입니다. 안전을 위해 입석은 불가하며 만차시 다음 회차의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1회 승차권 구입으로 운행시간 중 자유로운 승하차 가능

구분	성인	청소년	경로,어린이,장애인,국가유공자
정상요금	10,000원	8,000원	6,000원
· 10인 이상 단체 · 당일 열차 승차권 소지자 · 당일 고속버스 승차권 소지자 · 당일 항공권 소지자 · 외국인 대상 숙박권 소지자 (호텔,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시설 등)	8,000원	6,400원	4,800원

코스명	코스설명
순환 코스	동대구역→김광석 다시그리기길→동성로·중앙로역→근대문화골목→서문시장·청라언덕역→두류공원·이월드→앞산해넘이전망대→앞산공원·앞산전망대→고산골공룡공원·메타세콰이어길→수성못→대구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동촌유원지



2. 테마 코스

- 대구시티투어는 매주 화~일요일 주 6일 운행합니다.(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 테마 코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15인 이상 모객시 운영)
- 예약처 :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 대구광역시관광협회(053-627-8900)
- 48개월 이하인 유아가 무료로 탑승 시, 만차인 경우 좌석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접이식 휠체어 버스 탑재 가능(전동식 휠체어 탑재 불가)
- 출발 2일 전 오후 1시까지 예약접수가 가능하며, 사전예약자 15명 미달 시 운행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군위코스	팔공산, 낙동강, 사시사철, 현풍도깨비시장, 야경, 시즌투어	열차, 고속버스 승차권 소지자, (외국인 대상)숙박권 소지자, 항공권 소지자 * 투어당일 승차권 및 숙박권이여야함.
성인	12,000원	10,000원	20% 할인
청소년	10,000원	8,000원	20% 할인
경로, 어린이, 장애인	8,000원	6,000원	20% 할인
국가유공자	8,000원	6,000원	20% 할인

코스명	코스설명
팔공산	청라언덕역→동대구역→대구국제공항→봉무공원→팔공산 자생식물원→동화사시설지구→동화사→방짜유기 박물관→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청라언덕역
군위군 돌보기	청라언덕역→동대구역→군위삼촌석굴→부계면→사유원→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화본역&엄마 아빠 어렸을적에→동대구역→청라언덕역
낙동강	동대구역→청라언덕역→회원동산/사문진나루터→달성습지→디아크→청라언덕역→동대구역
사시사철	동대구역→청라언덕역→대구수목원→마비정 벽화마을→회원자연휴양림→인흥마을→대명유수지→청라언덕역→동대구역
현풍도깨비 시장	동대구역→청라언덕역→현풍도깨비시장→도동서원→국립대구과학관·달성화석박물관→송해공원(하계), 비슬산자연휴양림(동계)→청라언덕역→동대구역
군위전통 시장	청라언덕역→동대구역→삼국유사테마파크→군위전통시장→사라온이야기마을→혜원의 집→삼국유사테마파크→한밤마을(봄/가을), 군위댐(여름/겨울)→동대구역→청라언덕역
야경	청라언덕역→김광석 다시그리기길→앞산전망대→수성못→서문시장(야시장)→청라언덕역
시즌투어 산으로	청라언덕역→동대구역→방짜유기박물관→동화사시설지구→신승점장군 유적지→볼로동 고분군→동대구역→청라언덕역
시즌투어 강으로	청라언덕역→동대구역→하중도→삼성창조캠퍼스→침산정→동촌해맞이 공원→고모역 복합문화공간→동대구역→청라언덕역

(출처 : 대구시티투어 홈페이지)



⑤ 대구의 문화관광해설사

대구관광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고장을 방문한 국내외관광객의 이해와 감상·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요 관광명소에서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여 드립니다.

문화관광해설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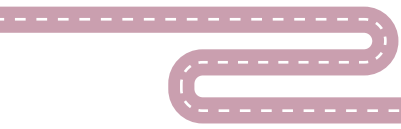
문화유적지 등 관광명소에 배치되어 문화재(국보, 보물, 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천연기념물 등) 및 지역문화, 관광자원 등을 국내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확히 설명·이해시킴으로써 문화관광체험 및 우리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려면?

현재 39개 주요명소에서 132명이 (연중1~2월 감축) 해설활동 중이며, 해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약 후 이용가능합니다.

(예약 및 문의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053-716-6406 / 군위군 문화관광과 054-380-6916)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handwriting practice, starting from the top of the page and extending down to the bottom.